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82

발의연월일: 2020. 7. 24.

발 의 자 : 김남국 • 권칠승 • 윤미향

이수진 · 임오경 · 오영환

전용기 · 장철민 · 박성준

장경태 · 강민정 · 최혜영

권인숙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되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함.

이에 정보비대칭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제63조제1항및 제87조의2제2항제3호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 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동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63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을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 4조제2항"으로 한다.

제87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한 자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제26조의2(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① 제3조제2 항제3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한다.②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한다.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자연 	리기기 설치 등) ① 제3조제2 항제3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개 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 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 이나 의료인은 해당 의료행위 를 하는 장면을 「개인정보 보 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 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자 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 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
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	│ ○ ○ ○ ○ ○ ○ ○ ○ ○ ○ ○ ○ ○ ○ ○ ○ ○ ○ ○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u>다.</u>
④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자료
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동의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⑥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영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른다.
데63조(시정 명령 등) ①
<u>제26</u> 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

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제87조의2(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u><신 설></u>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7조의2(벌칙) ①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
승)
2
1.•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한 자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7조이9(번치) ① (혀해고 가

2	다음	는 각	호의	의 어	느	하니	-에
해대	당하	는 지	느	5년	이형	1의	징
역	기나	5천 달	만원	이ㅎ	나의	벌금	-에
처형	한다.						

1. • 2. (생략)

<u> <신 설></u>

<u>3.·4.</u> (생 략)

$\frac{\bullet}{\Box}$)
②
<u>.</u>
1.•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한 자
<u>4.·5.</u>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